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및 정신 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99호, 2021. 7. 20. 공포, 2022. 1. 21. 시행)됨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,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(안 제6조)

천재지변,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

나. 통보의 절차 및 범위(안 제20조의2제1항, 제2항, 제3항)

- 1)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 및 주거, 죄명 및 형명·형기,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,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

2) 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 결정

3)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보호관찰 종료일, 병명 및 치료이력 등

다. 통보 방법(안 제20조의2제4항)

보호관찰소의 장은 통보할 수 있는 정보를 형사사법정소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통보

라.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(안 제51조제2항)

보호관찰소의 장이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회의”를 “천재지변,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와 회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)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 및 주거
2. 죄명 및 형명·형기
3.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
4. 병명 및 치료 이력
5. 신청의 이유
6. 그 밖의 참고사항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명

2. 주민등록번호

3. 주거

4. 보호관찰 종료일

5. 병명 및 치료 이력

6.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「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5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의결 및 결정) ① (생 략)	제6조(의결 및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 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<u>회의</u> 를 개최할 시 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 우로서 의결 사항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천재지변, 감염병 예 방 및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 태의 발생으로 인해 회의 소집 이 극히 곤란한 경우와 회의-- -----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<u>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 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</u>
<u><신 설></u>	제20조의2(정신질환 보호관찰 대 상자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) ① <u>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 조의2제2항에 따라 종료사실 통 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 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.</u>

1.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, 주민
등록번호, 직업 및 주거

2. 죄명 및 형명·형기

3.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

4. 병명 및 치료 이력

5. 신청의 이유

6. 그 밖의 참고사항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사위
원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
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
실 통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
다.

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
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수
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명

2. 주민등록번호

3. 주거

4. 보호관찰 종료일

5. 병명 및 치료 이력

6.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
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
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
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
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

	<u>제3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,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.</u>
제5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11. (생략) ③ ~ ⑥ (생략)	제5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</u>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보호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789